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01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9.

발 의 자 : 강선영 · 고동진 · 최보운
유용원 · 최수진 · 조정훈
이만희 · 이달희 · 이인선
주호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,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,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휴직 여부가 결정되어 휴직 처분의 객관성 및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때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그 처분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제2항 후단 및 제9항 신설).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때에는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⑨ 제2항 후단에 따른 휴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휴직에 관한 적용례) 제4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8조(휴직) ① (생 략)	제48조(휴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,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 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[약식명령 (略式命令)이 청구된 경우는 제 외한다] 제1심에서 금고 이상 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 용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의 요청 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u><후단 신설></u>	<u>이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때에는 휴직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u>
③ ~ ⑧ (생 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⑨ 제2항 후단에 따른 휴직심 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